

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령

개정이유

건축법 시행령의 개정(1988.2.24, 대통령령 제12, 403호)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건축물 유지 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, 동 조사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함(제10조의 2).
- 나. 지체부자유자 전용 변소의 설치 기준을 정함(제27조 제4항).
- 다. 건설부에 두는 중앙 건축 위원회의 심의사항·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7조의 4).
- 라. 지하층 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지표에서 깊이 5미터 이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흙막이판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(별표 1).

개정내용

건축법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③법 제5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 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.
- 제3조의 2중 “별지 제5호의 2서식”을 “별지 제5호의 3서식”으로 한다.
- 제4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배치도·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
2.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 각 1부(영 제1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한다.)
-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0조의 2(건축물의 유지관리) ①영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 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지: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여부 등
2. 구조:법 제10조 내지 제17조 및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 등
3. 설비:법 제22조·법 제22조의 2·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, 비상급수설비등 건축설비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
4. 형태:법 제31조·법 제39조의 2·법 제40조·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형태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
5. 용도:법 제32조·법 제33조 및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한 적합 여부
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에 관한 조사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 조사서에 의한다.
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1. 각종 평면도(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평면도를 포함한다) 1부
 2. 승강기 등 건축설비에 대하여 건축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설계도서 각 1부
- 제1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.
- 제19조 제1항 본문중 “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”을 “영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벽”으로 한다.
- 제23조의 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전기 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

아니한다.

제27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영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
자용 변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변소 및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출입
문은 유효폭이 0.9미터 이상으로 할 것.

2.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각변의 길이
는 유효폭이 2미터 이상으로 할 것.

3. 대변기의 양측에 수직 및 수평의 손잡이를
설치할 것.

제27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 4(중앙건축위원회) ①법 제44조의
2 제1항 및 영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앙
건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
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건축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
가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

2. 건축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
시설계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건축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
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
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 차관이 되고, 부
위원장은 건설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
건설부 장관이 임명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
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부 장관
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
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.

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
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공
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
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
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
이 정한다.

[별도1]중 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9 토지의 형질변경 을 요하 는 경우	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의	1. 축척 및 방위 2. 종·횡단면 3. 구조물의 위치
	토지의 단면도 임의	1. 축척 2. 단면상세(구조물 및 인접 토지를 포함한다)
	흙막이판구조도(지 임의 표면에서 깊이 5미터 이 상을 굴착하는 경우에 한한다)	1. 축척 2. 평면 및 단면 3. 공법

[별지 제5호의 2서식]을 [별지 제5호의 3서식]
으로 하고 [별지 제5호의 2서식]을 별지와 같
이 신설하며 [별지 제6호서식]을 별지와 같
이하고, [별지 제10호서식]중 ④공사 감리자란
및 ⑤공사 시공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공 사 감 리 자	성 명	주민등록 번호 등록번호 (전화) 주민등록 번호 호
	사 무 소 명 소 주 주 업 상 주 감 리 건 축 사 보 의 설 명	
⑤ 공 사 시 공 자	성명 또는 상호 주 소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현장배치기술자 의 성명	건설업 면허번호 (전화) 자격 및 면허번호
	성명 또는 상호 주 소 건설업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현장배치기술자 의 성명	

[별지 제11호서식] 제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,
[별지 제14호의 2서식] 제67항중 "(58+59)+
(60+61+62)"를 "(58+59+60+61+62+66)"
으로 하며, 동서식 제70항중 "Mcal / m^2 h °C"
를 "Mcal / m^2 hr"로 하고, [별지 제21호서식]을
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※제서식: 생략

부칙

①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
다. 다만, 제16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
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관한 경과
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
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
의 규정에 의한다.

(자료: 건설부 제공)